

2025 예술경영대상 공모 안내(안)

문화체육관광부와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는 2012년부터 예술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경영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고자 <예술경영대상>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올해 14회를 맞는 <2025 예술경영대상> 공모에 예술경영 관련 우수사례를 공유하고자 하는 우수 예술기업 및 단체, 예술분야 지원기관, 예술경영인(개인)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및 추천을 부탁드립니다.

□ 공모개요

- (공 모 명) 2025 예술경영대상 공모
- (공모목적) 예술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경영사례 발굴 및 확산
- (공모 및 추천 대상) 예술산업 분야 발전에 기여한 우수 예술기업 및 단체, 예술분야 지원기관, 예술경영인(개인) * 본인 추천(신청) 가능
- (공모기간) 공모일 ~ 9. 30.(화) 18:00 (예정)
- (선정규모) 3개 유형, 6개 우수사례

□ 세부내용

- (공모 및 추천 기준) 최근 3년여간(2022.1.1.~공모마감일)의 예술산업분야 경영 활성화 및 문제 해결, 발전에 기여한 우수 기업, 단체, 지원기관 및 예술경영인(개인)
- (사례주제) 예술산업 분야 경영 관련 분야별 우수사례

구분	우수사례 예시
시장개척	신규 사업모델·브랜드 개발·마케팅을 통한 매출 증대 및 수익 창출, 판로개척, 관객 개발 사례 등
일자리·일거리 창출	예술산업 신규 일자리 및 예술가 일거리 창출로 예술가 창작환경 개선 및 시장기회 제공 등 예술분야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 등(프리랜서 아티스트 고용 및 협업사례 포함)
투자·후원 유치	예술산업분야 투자후원 개발 및 유치 확대에 기여한 사례 등
해외진출	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 등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례 등

○ (접수유형)

유형	대상
유형 1	문화예술진흥법 제2조(정의)에 해당하는 예술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우수 예술기업 및 비영리법인(단체)
유형 2	예술기업·단체의 성장과 경영 활성화를 지원 하여 예술산업 발전 및 확산에 기여한 공공 또는 민간 예술분야 지원기관 (예) 지역/민간 문화재단, 예술후원 기업(기관), 투자사 등
유형 3	예술분야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 예술경영인(개인)

* (예술기업) 예술분야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예술산업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

미술(응용미술 포함), 음악, 무용, 연극, 영화, 연예(演藝), 국악, 사진, 건축, 어문(語文), 출판, 만화, 게임,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보유한 예술 분야의 기업

*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(정의) (개정 23.6.20.) (시행 23.12.21.)기준으로 예술기업 정의

* 연예, 영화, 만화, 건축, 출판, 어문, 게임, 애니메이션 등은 후 순위

○ (선정 및 포상규모) 3개 유형, 6개 우수사례(총40백만원)

구분		유형 1(예술기업·단체)	유형 2(지원기관)	유형 3(개인)
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	매수	2매	1매	1매
	시상금	각 10백만원	-	5백만원
수림문화재단 이사장상	매수	1매		
	시상금	10백만원		
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상	매수	1매		
	시상금	5백만원		
합계		40백만원		

*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의 경우 정부포상 · 문체부 장관포상 업무지침에 따름

○ (추진절차)

공모 및 추천 접수	추가서류접수 및 요건검토	유형 1,2 1차 서류심사	유형 3 심사	유형 1,2 2차 발표심사	선정발표	워크숍	예술경영대상 시상식
공모일 ~ 9월 30일	10월 2주	10월 3주	10월 4주	10월 5주	11월 2주	11월 3주	11월 4주
이메일 접수	서류미비, 중복신청, 신청자격 등	유형별 4배수 내외 선정	유형 3 1건 최종 선정	유형 1,2 5건 내외 최종 선정	최종 선정결과 공고	최종 선정 우수사례 발표 워크숍	최종 선정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

*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□ 공모 및 추천 접수

○ (제출서류)

구분	유형1	유형2	유형3
	예술기업(단체)	예술분야 지원기관	개인
필수	① 공모신청(추천서) ② 사업자등록증(또는 고유번호증), 법인등기부등본(법인만 해당)	① 공모신청(추천서) ② 사업자등록증(또는 고유번호증), 법인등기부등본(법인만 해당)	① 공모신청(추천서)
선택	① 예술기업(단체) 소개서 ② 관련 증빙자료 (성과 및 실적 입증 가능한 자료)	① 예술분야 지원기관 소개서 ② 관련 증빙자료 (성과 및 실적 입증 가능한 자료)	① 포트폴리오 등 ② 관련 증빙자료 (성과 및 실적 입증 가능한 자료)

* 세부내용 공모신청서내 [예술경영대상 공모 제출서류 및 작성 유의사항 안내] 참조

* 유형[1], 유형[2]의 경우 1차 서류심사 선정단체에 한하여 발표심사용 PPT 추가 제출 요청 예정

* 유형[3] 추천의 경우 접수 후 관련 자료 추가 제출 요청 예정

* 최종 선정사례의 신청서 작성 내용은 보도자료 및 홍보물로 활용될 수 있음

○ (접수기간) : 공모일 ~ 9. 30.(화), 18시까지

* 접수마감일 18시 이후 제출 건은 심사에서 제외됨

○ (접수방법) : 이메일 접수

- 접수처 : artsdb@gokams.or.kr

- 모든 제출서류는 압축파일(ZIP) 하나로 제출(파일명 및 메일 제목 통일)

- 파일명 및 메일 제목 : 2025예술경영대상[유형 1/2/3 중 선택 기재]_단체/성명

* 예시 : 2025예술경영대상 [유형1]_예술경영지원센터.zip

□ 심사 및 선정

- (심사일정) 2025년 10월 3주 ~ 10월 5주
 - (유형 1,2 1차-서류심사) 10월 3주 예정
 - (유형 3 심사) 10월 4주 예정
 - (유형 1,2 2차-발표심사) 10월 5주 예정

*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- (심사방법) 외부 전문가에 의한 심사(3~5인 내외)

구분	유형1	유형2	유형3
1차 심사 (10월 3주)	· 서류심사 진행		· 서류심사 최종 선정 (10월 4주)
	총 8건 내외	총 4건 내외	
2차 심사 (11월 2주)	· PT심사 진행		1건
	총 5건 내외		

- (심사기준) 주제는 통합하며, 유형별 구분하여 심사

구분		항목	배점
유형 1-2	1차 (서류)	공모주제별 개선 사례의 수행실적	40
		타 사례와 구별되는 혁신성과 차별성	20
		문제해결 방식의 우수성	20
		해당 사례의 예술분야 기여도	20
	2차 (발표)	타 사례와 구별되는 혁신성과 차별성	40
		문제해결 방식의 우수성	30
		해당 사례의 예술산업분야 기여도	30
		발표 전달력	10
유형 3	1차 (서류)	공모주제별 개선 사례의 수행실적	40
		타 사례와 구별되는 혁신성과 차별성	20
		문제해결 방식의 우수성	20
		해당 사례의 예술분야 기여도	20

- (심사 검토사항)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 제외 혹은 감점

- 유형별 중복 신청 불가
- 동일한 사례로 본 공모 및 타 기관에서 인증·수상한 경우
- 제출자료가 미흡한 경우

- (선정발표)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 공고 및 개별 안내

- (최종선정 우수사례 발표) 2025년 11월 20일(예정)

* 최종 선정기업/단체/기관/개인은 예술경영대상 시상식 참석, 우수사례 발표 워크숍 참여 및 사례 발표 필수

□ 문 의 :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혁신성장팀

- (전화) 02-708-2237
- (운영시간) 9:00 ~ 18:00 (점심시간 12:00 ~ 13:00)

[참조] 포상기준 및 포상취소

-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의 경우 정부포상·문체부 장관포상 업무지침에 따름

※ 장관포상 제외자

- 임직원이 포상제외자에 해당하거나, 포상대상 단체가 2년 이내 동일분야 공적으로 단체표창을 받은 경우
- 포상제외자 :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, 산재비율이 높은 기업체 및 그 임원,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, 임금체불사업주, 각종 비리 부조리,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

-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수여 단체·법인이 「상훈법」 제8조에 해당할 경우 취소될 수 있음

※ 상훈법 제8조(서훈의 취소 등)

-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,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한다.
 1.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
 2.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(敵對地域)으로 도피한 경우
 3. 사형,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